<별지 제5호> <개정 2014.12.12., 2021.10.13.>

합병 승인(인가)신청서

신청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합병 후 신설 (존속)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
■ 첨부서류

1. 합병계약서 사본 1부
2.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(안)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제정(안) 1부
3. 합병 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
4.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
5. 합병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(사업전략,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탁고, 조직구조 등 포함) 1부(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)
6.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7. 합병계획서 및 합병의 이유·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
8. 합병 후 추정 순자본비율·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
9. 합병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
10.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선임(예정)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
11. 투자자·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
12. 당해 각 회사의 합병 전·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
13. 합병비율 및 이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(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) 1부
14.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
15.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
16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1항제1호
(또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)에 따라
위와 같이 합병의 승인(금산법상 인가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